

제 26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구미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				
집 회 기 간	1993. 6. 14 - 6. 23				
의 결 일 시	1993. 6. 23	재 적 의 원	21 명	출 석 의 원	21 명
의 결 사 항 o 의결결과 : 원안대로 의결 첨 부 : 구미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1993 년 6 월 24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이 대 일					
의 결 방 법	이상유무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21 명	반 대	명	기 권

구미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 (안)

구미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 (1989.6.14 조례 779호)는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6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집 회 기 간	1993. 6. 14 - 6. 23					
의 결 일 시	1993. 6. 23	재 적 의 원	21 명	출 석 의 원	21 명	
의 결 사 항 ○ 의결결과 : 원안대로 의결 첨 부 :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끝 1 9 9 3 년 6 월 24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이 대 일						
의 결 방 법	이상유무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21 명	반 대	명	기 권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 (안)

구미시 사무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위임사항) "별표" 중 사회산업란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제4호 다음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사회산업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5.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의 결정	생활보호법 제 21조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6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집 회 기 간	1993. 6. 14 - 6. 23					
의 결 일 시	1993. 6. 23	재 적 의 원	21 명	출 석 의 원	21 명	
의 결 사 항						
○ 의결결과 : 원안대로 의결						
첨 부 :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1부. 끝						
1 9 9 3 년 6 월 24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이 대 일						
의 결 방 법		이상유무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21 명	반 대	명	기 권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운영)중 "사회복지법인 단체또는 개인중" 을 "사회복지법인 단체중" 으로 한다.

제7조(시설운영) 제3항중 "요금을 별도로 정한다" 를 "요금으로 한다" 로 한다

제9조(사용료)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제3항을 신설 한다.

① 복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다음요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1. 목욕실 사용료및 직업훈련실 수강료는 "별표1" 과 같다.

2. 복지관어린이집에 어린이를 위탁하고자 하는자는 매년도의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 산정한 보육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 납입한 사용료,수강료및 보육료와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준용규정)중 (보사부훈령 제568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구미시종합사회복지관 시설사용료

구 분	단 위	요 금	비 고
목 욕 탕	1인당/ 1회	대 인 700 원 소 인 400	
직 업 훈 련 실	1인당/ 1월	5,000 원	수강료

제 26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구미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집 회 기 간	1993. 6. 14 - 6. 23					
의 결 일 시	1993. 6. 23	재 적 의 원	21 명	출 석 의 원	21 명	
의 결 사 항						
○ 의결결과 : 원안대로 의결						
첨 부 : 구미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끝						
1993 년 6 월 24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이 대 일						
의 결 방 법	이상유무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21 명	반 대	명	기 권	

구미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및 제8조중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새마을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를 「저소득 주민으로서 자립의욕이 강한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 대상자로 하며」
로 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의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매년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생업자금의 융자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6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구미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안) 의결의 건				
집 회 기 간	1993. 6. 14 - 6. 23				
의 결 일 시	1993. 6. 23	재 적 의 원	21 명	출 석 의 원	21 명
의 결 사 항 ○ 의결결과 : 원안대로 의결 첨 부 : 구미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1부. 끝 1 9 9 3 년 6 월 24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이 대 일					
의 결 방 법	이상유무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21 명	반 대	명 기 권	

구미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전세입주 보증금 지원" 을 "주거안정" 으로 한다.

제1조 중 "전세입주보증금 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를 "전세입주보증금 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세대에 대한 보증금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으로 한다.

제2조 중 "매년 3억원 이상의 기금을" 을 "필요한 자금을 기금으로" 로 한다.

제3조 중 "입주대상" 을 "전세입주 대상" 으로 하고 또 "의료부조대상자" 세대로 한다" 를 "의료부조 대상자 세대로 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은 시행청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른다" 로 한다.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전세입주 신청세대에 대하여 생활상태등을 조사하고 시 생활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세대를 선정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는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동장의 보고에 의하여 시장이 선정한다.

제6조 제1항중 "전세금마련을 쉽게" 를 "전세금마련 및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쉽게" 로 하고 제2항중 "전세입주 보증금" 을 "전세입주 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으로 한다.

제7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임차주택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법원의 소정 절차에 의한 확정일자 부여로 가름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은 가구당 150만원한도로 하고 용자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② 입주보증금은 입주자에게 무보증으로 지원하되 타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③ 시장은 용자 대상자의 명부를 주택공사에 통보하여 임대해지시 보증금 회수에 철저를 기한다.

"제8조 (임대해약)" 을 "제9조 (계약해지)" 로 하고 내용중 "임대를 해약"을 "계약을 해지" 로 한다.

"제9조" 를 "제10조" 로 하고 내용중 "임대주택" 을 "전세임대주택" 으로 한다.

"제10조" 를 "제11조" 로 하고 내용중 "제8조" 를 "제9조" 로 하며, 또 "입주세대" 를 "전세임대세대" 로 한다.

제11조 (임대주택의 명의 이전) 내지 제16조 (시행규칙)을 삭제하고

제12조 (임대주택의 명의이전 및 보증금 회수) 내지 제18조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임대주택의 명의이전 및 보증금 회수) ① 시장은 전세입주 세대의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즉시 회수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②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의 보증금 융자금기간이 만료되면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3 조(회수자금의 용도) ① 회수된 자금은 저소득층 관련 특별회계에 즉시 여입하여야 한다.

② 회수된 자금은 생활안정자금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에 재투자하되, 융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저소득층 전세입주 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 지원사업 기금의 재정은 저소득층 관련 특별회계내에 따로 설정하여 운용 관리한다.

제15조(세입, 세출) ① 저소득층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기금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저소득층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기금의 세출은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에 의한 사업비로 한다.

제1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재산 이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전세 입주 및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지원사업기금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규칙) 전세입주 보증금 지원사업 및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6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구미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집 회 기 간	1993. 6. 14 - 6. 23				
의 결 일 시	1993. 6. 23	재 적 의 원	21 명	출 석 의 원	21 명
의 결 사 항 ○ 의결결과 : 원안대로 의결 첨 부 : 구미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끝 1993 년 6 월 24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이 대 일					
의 결 방 법	이상유무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21 명	반 대	명	기 권

구미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2호중 "처리장 시설의 증설, 보수 및 유지관리"를 "처리장 및 차집관로
오수유입구, 배수펌프장 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로 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6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집 회 기 간	1993. 6. 14 - 6. 23				
의 결 일 시	1993. 6. 23	재 적 의 원	21 명	출 석 의 원	21 명
의 결 사 항 ○ 의결결과 : 원안대로 의결 첨 부 :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끝 1993 년 6 월 24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이 대 일					
의 결 방 법	이상유무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21 명	반 대	명	기 권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위원은 시의회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2이상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수의 전체위원수에 대한 비율이 제2조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위원수의 비율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당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26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집 회 기 간	1993. 6. 14 - 6. 23				
의 결 일 시	1993. 6. 23	재 적 의 원	21 명	출 석 의 원	21 명
의 결 사 항 ○ 의결결과 : 원안대로 의결 첨 부 :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끝 1993 년 6 월 24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이 대 일					
의 결 방 법	이상유무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21 명	반 대	명	기 권

구미시건축조례개정조례 (안)

구미시 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 (지방건축위원회) 제3항중 " 의회와 협의하여 " 를 삭제 한다.

보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6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집 회 기 간	1993. 6. 14 - 6. 23					
의 결 일 시	1993. 6. 23	재 적 의 원	21 명	출 석 의 원	21 명	
의 결 사 항						
○ 의결결과 : 원안대로 의결						
첨 부 :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끝						
1993 년 6 월 24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이 대 일						
의 결 방 법	이상유무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21 명	반 대	명	기 권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 교통 안전 대책위원회 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구성) 2항 5호중 "의회와 협의하여 "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6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1993년도 정수물품 승인(안) 의결의 건				
집 회 기 간	1993. 6. 14 - 6. 23				
의 결 일 시	1993. 6. 23	재 적 의 원	21 명	출 석 의 원	21 명
의 결 사 항 ○ 의결결과 : 원안대로 의결 첨 부 : 1993년도 정수물품 승인(안) 1부. 끝 1993 년 6 월 24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이 대 일					
의 결 방 법	이상유무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21 명	반 대	명	기 권

정 수 물 품 승 인 내 역

구 분 품 목 별	부 서 별	요 구 내 역			취 득 사 유	승 인	
		정수	실수	부족		여	부
다기능사무기기	세 무 과	35	32	3	° 1세대 2차량, 1세대 2주택 제산세 중과세 용 및 체납차량 검색용 (출장휴 대용)	3	
청 소 차	청 소 과	12	11	1	° 쓰레기 수거용	1	

제 26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집 회 기 간	1993. 6. 14 - 6. 23				
의 결 일 시	1993. 6. 23	재 적 의 원	21 명	출 석 의 원	21 명
의 결 사 항					
○ 의결결과 : 수정 의결					
첨 부 :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부(예산수정안 포함). 끝					
1 9 9 3 년 6 월 24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이 대 일					
의 결 방 법		거 수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18 명	반 대	명 기 권	3 명

세출예산(안)총괄표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단체장 세출예산 (안)	위원회조정(안) 삭감액	승	인	예	산	비	고
합		계	135,848	243		135,848			삭감액 243,607천원 일반회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한다.	
일	반	회	61,190	243		61,190				
특	별	회	74,658	0		74,658				
특	별	하수도 사업	4,435	0		4,435				
		주택 사업	18,689	0		18,689				
		의료 보호 사업	683	0		683				
		새마을 소득금고	42	0		42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68	0		68				
		영세민생활안정자금	236	0		236				
		공업용지 조성사업	570	0		570				
		토지구획 정리사업	23,500	0		23,500				
		치수 사업	476	0		476				
		공유림 관리	26	0		26				
회	계	지방 양여금	14,571	0		14,571				
		상수도	10,336	0		10,336				
		통합공과금	1,026	0		1,026				

삭 감 액 조 서

과 목					내 역			비 고
관	항	세 항	세세항	목	<승인액>	<요구액>	<삭감액>	
의 회 운 영	지 방 의 회 회 운영	의 회 운 영	경 상 사 업 비	수 용 비 및 수 수 료 보 상 금	· 의회소식지 발간 2,917,200 - 5,834,400 = △ 2,917,200			P 37
					· 의정활동 홍보사례 5,000,000 - 10,000,000 = △ 5,000,000			
기 획 관 리 비	기 획 감 사 및 법 무 관 리	기 관 회 리	기 본 경 상 비	급 량 비	· 시정기획 및 행정쇄신 업무추진 야근자 급식 3,150,000 - 4,200,000 = △ 1,050,000			P 47
		투 자 심 사	경 상 사 업 비	용 역 비	· 민.관 공동출자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 20,000,000 - 30,000,000 = △ 10,000,000			P 49
	예 산 관 리	예 산 운 영 관 리	기 본 경 상 비	민 에 대 한 경 상 보 조	· 임의 (POOL) 보조 기준액 82,000,000 - 110,000,000 = △ 28,000,000			P 54
			경 상 사 업 비	국 내 여 비	· 재정년감 작업 및 각종합동 작업 0 - 3,000,000 = △ 3,000,000			
	공 보 관 리	공 보 관 리	경 상 사 업 비	보 상 금	· 시정언론 홍보사례 20,000,000 - 24,000,000 = △ 4,000,000			P 64
내 무 행 정 비	총 무 인 사 행 정	서 관 무 리	기 본 경 상 비	수 용 비 및 수 수 료	· 금오회 회의서류 0 - 6,600,000 = △ 6,600,000			P 80
	문 서 통 신 관 리	민 업 원 무	경 상 사 업 비	자 산 취 득 비	· 인증기 0 - 1,800,000 = △ 1,800,000			P 96
복 지 사 업 비	일 반 사 회 복 지	근 로 청 소 년 회 관 운 영	주 요 사 업 비	대 수 선 비	· 이.미용실 설치 15,000,000 - 20,000,000 = △ 5,000,000			P 155

삭 감 액 조 서

과 목					내 역			비 고
관	항	세 항	세세항	목	<승인액>	<요구액>	<삭감액>	
보 건 위생비	보 관 건 리	부녀복지회관	경 상 사업비	대 수선비	개나리 아파트 물탱크 교체 15,000,000 - 20,000,000 = △ 5,000,000			P 173
					지하 방수 및 수선 8,000,000 - 10,000,000 = △ 2,000,000			
		보건기관운영	경 상 사업비	대 수선비	화장실 보수공사 6,000,000 - 8,000,000 = △ 2,000,000			P 183
		청 소 관	기 본 경 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	쓰레기 분리수거 안내 전단 및 책자 3,000,000 - 4,000,000 = △ 1,000,000			P 197
지 역 개발 사업비	지 역 개발	공 원 관 리 소 영	경 상 사업비	자 산 취득비	산화경방 및 행락질서 계도용 메인 램프 교체 0 - 2,000,000 = △ 2,000,000			P 314
			"	대 수선비	공원벤취 보수 및 도색 1,450,000 - 2,450,000 = △ 1,000,000			
문 화 예 진 흥비	문 화 예 진 흥	문 화 예 진 흥	경 상 사업비	민간에 대한 위탁금	전체예산 부기중 12,000,000- 17,000,000 = △ 5,000,000			P 320
체 육 비	체 육 진 흥 관 리	체 진 육 흥	"	민간에 대한경 상보조	제 16회 시민체육대회 개최지원 0 - 60,000,000 = △ 60,000,000			P 339
				민간에 대한 위탁금	우수실업팀 육성 (레슬링팀) 24,000,000 - 48,000,000 = △ 24,000,000		P 340	

삭 감 액 조 서

과 목					내 역			비 고
관	항	세 항	세 세 항	목	<승인액>	<요구액>	<삭감액>	
민방위 비	민방위 관 리	체육시 설확충	주 요 사 업 비	토 지 매 입 비	• 사곡동 체육공원 부지 매입비 $0 - 72,800,000 = \Delta 72,800,000$			P 341
		민방위 시 설 비 장	기 본 경 상 비	수 용 비 및 수 수 료	•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 구입 $160,000 - 1,600,000 = \Delta 1,440,000$			P 372

사 고 이 철 사 업 조 서

원 반 회 계

(단위: 원)

관	과 목				사 업 명	예산액	처분연인 가	처분액 나	처분잔액 (가-나)	차이액	이월액	기
	항	세항	세항	목								
도	시	도	시	주요	만주몽지관완 도로개설	316,000,000	314,789,300	165,014,550	1,220,700	209,772,250	보상금 수월 지면	
시	발	시	도	구입비	주미국교후원회 도로개설	338,000,000	323,594,450	271,822,700	34,405,550	31,771,250	"	
"	"	"	"	"	지산국교로 도로개설	365,000,000	361,116,240	355,091,460	3,783,960	6,115,000	"	
"	"	"	"	"	충북국 ~ 남대문회관 도로개설	608,100,000	608,095,280	591,191,130	4,720	16,904,550	"	
"	"	"	"	"	주산아파트 소방도로개설	134,000,000	133,398,250	129,440,320	603,750	3,946,430	"	
"	"	"	"	"	도합3종도~6반소방도로개설	193,600,000	193,421,550	183,171,550	78,450	150,000	"	
"	"	"	"	"	광안아파트도로개설	200,000,000	198,462,500	187,444,500	1,537,500	11,000,000	"	
"	"	"	"	"	인동읍사무소도로개설	168,000,000	167,994,500	161,570,000	5,500	324,500	"	
"	"	"	"	"	법령대법원 진입로 개설	151,000,000	150,047,350	149,377,350	9,520,550	210,000	"	
"	"	"	"	"	유계영묘산 도로확장	200,000,000	111,577,330	126,109,270	9,402,670	85,428,000	"	
"	"	"	"	"	선평리구 구거관개설사업	1,056,000,000	1,037,155,880	1,025,555,660	18,844,320	11,600,000	보상금 지급 지면	

사 고 이 철 사 업 조 서

일 반 회 계

(단위: 원)

과	부			사 업 명	예 산 액	지 출 액 (가)	지 출 액 (나)	지 출 잔액 (가-나)	차 이 액	이	세 수 기
	관	항	세 계 항	목							
도로 및	도로 및	도로 및	도로 및	도로 및							
도로 및	도로 및	도로 및	도로 및	도로 및	1,250,000,000	1,249,474,000	1,170,044,000	25,26,000	7,643,000	보 상 철 의 세	
					15,562,000	15,536,330	1,910,320	25,670	13,626,010	"	
					90,000,000	59,773,970	23,151,970	20,226,930	36,622,200	부 산 제 방 쿠 로 철 의 세	
도로 및	도로 및	도로 및	도로 및	도로 및	46,000,000	37,200,000	0	2,300,000	37,200,000	철 의 세	
					19,950,000	16,600,000	0	3,350,000	16,600,000	"	
					21,660,000	18,709,780	2,020,040	2,950,220	16,689,740	"	
					600,000,000	599,983,550	226,631,300	16,450	393,352,250	보 상 철 의 세	
도로 및	도로 및	도로 및	도로 및	도로 및	37,500,000	35,530,000	10,000,000	1,970,000	25,530,000	철 의 세	
					200,000,000	190,500,000	0	19,500,000	190,500,000	철 의 세	
					42,308,321,000	11,282,537,460	7,181,713,690	4,554,440	4,908,238,700		

사 고 이 셴 사 업 조 서

특 별 회 계

(단위: 천)

과 목				사 업 명	예 산 액	지 출액 (가)	지 출액 (나)	차 출액 (나-가)	차 년도 이월액	이월 수	기
관	항	세	항	목							
(화수)	수도사업비	사업비	특수사업비	특별회계)			44,571,420	11,166,910	192,261,610	기본 및 예산 설계 용역과 도설계 심의 결정이행으로 공가부족	
(공업)	용역사업비	사업비	특별회계)	특별회계)	250,000,000	238,833,090					
	사업비	사업비	특별회계)	특별회계)	20,000,000	6,401,470	4,543,940	13,538,530	1,917,530	보상금 수령 지연	
(치수)	수사업비	사업비	특별회계)	특별회계)							
	사업비	사업비	특별회계)	특별회계)	6,000,000	5,236,400	5,193,600	313,600	472,800	보상금 수령 지연	
(토지)	구획정리사업비	사업비	특별회계)	특별회계)	2,000,000,000	1,928,076,600	4,471,530	71,923,400	1,856,153,170	도시관리청과 사업장 등록으로 관부 지연	
	사업비	사업비	특별회계)	특별회계)	200,000,000	141,462,330	33,864,050	58,537,670	107,598,280	그회 추경지 예산 확립으로 공가 지연	
	"	"	"	"	200,000,000	199,360,250	21,860,250	397,500	178,100,000	"	
	"	"	"	"	200,000,000	199,360,250	21,860,250	397,500	178,100,000	"	

사 고 이 첩 사 업 조 서

(단위: 천)

특별 회 계

관	과				사 업 명	예산액	저출생인구 저출생액 (가)	지출액 (나)	지출잔액 (㉔-㉓)	차입금액	이 첩 수 기
	항	세	항	목							
사업비	사업비	도로행위 경비사업	주요 사업비	용역비	한국지구 환경청제 용역	130,000,000	117,000,000	0	13,000,000	117,000,000	사업시행 절차 이행 (도시계획시원 결정등) 으로 받구 지역
"	"	"	"	"	한국 ~ 음오산 도로개설 기본 및 원시 설계 용역	89,000,000	47,800,000	0	21,195,000	47,800,000	그해 주경시 예산 확보로 기간 부족
"	"	"	"	투자사업 비	한국지구 보양 및 평산	650,000,000	618,663,200	44,178,440	31,326,900	571,481,760	전상후 추경 계획
"	"	"	"	사업부채비	한국도시관 건설 합리용역	154,222,000	129,993,000	84,525,000	26,529,000	48,100,000	본공사 계속계 사업으로 이월액 없음
(지)강 사업비	도로행위 사업비	도로행위 사업비	주요 사업비	특별 회계	국도 33 호선 개설	1,478,400,000	1,471,640,570	1,466,790,270	6,758,430	4,850,300	본공사 결의 사업
"	"	"	"	"	합은 선입로 개설	782,500,000	782,499,500	679,142,250	500	1,433,500,250	"
"	"	"	"	"	구기 권 정화 사업	1,400,000,000	1,040,964,470	300,035,530	35,903,530	734,990,750	설계 용역 등의 행정 절차 이행 기간 소모로 금기 무효

५
५
५
५
५
५
५

(४३)

(
र
नि
म
म
)

[illegible]

제 수 비 사 업 조 서

(단위: 원)

사 업 명	수 입 량	주 분	총 액	전 전 회 도 이 전				전 년 도			1993 회도 제 국 액	1994 회도 제 국 액	1995 회도 제 국 액	비 고
				매 산 액	집 행 액	집 행 잔액	매 산 액	집 행 액	집 행 잔액					
도 랑 지 구 시 읍 아 파 트 건 설	아파트: 960세대 판매사원: 844명 주입보수사원: 1등	항 초 수 정	29,449,000 29,449,000				1,110,000 1,110,000				14,108,500 10,430,000	12,938,500 17,270,000		
	광 평 천 복 개		항 초 수 정	13,000,000 11,000,000				3,000,000 3,000,000				5,000,000 5,000,000		
													</	

제 26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중앙고속도로 가산인터체인지 건설에 따른 건의서 채택의 건				
집 회 기 간	1993. 6. 14 - 6. 23				
의 결 일 시	1993. 6. 23	재 적 의 원	21 명	출 석 의 원	21 명
의 결 사 항 ○ 의결결과 : 원안대로 채택 첨 부 : 중앙고속도로 가산인터체인지 건설에 따른 건의서(안) 1부. 끝 1993 년 6 월 24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이 대 일					
의 결 방 법	이상유무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21 명	반 대	명	기 권

建 議 書

文民政府의 새 地平이 열리며 강물처럼滔滔히 밀려오는 新韓國 創造의 물결은 時代的 아픈 過去와 잘못된 慣行을 治癒하면서 絶對多數의 國民으로 부터 支持와 聲援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龜尾市 議會도 22萬 市民과 더불어 果敢한 改革과 清算 作業에 全幅的인 支持를 보내면서 認識과 發想의 大轉換으로 市民意識을 드높여 同參의 隊列에 서고자 努力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龜尾는 內陸 最大의 尖端 電子 纖維工業都市로서 既存 第1, 第2, 第3工團 530萬坪에 入住業體 349개사가 稼動中에 있으며, 오는 '87년까지 第4工團 240萬坪이 完工되면 高 附加價值·知識 集約型 産業의 集中으로 科學技術과 産業構造를 高度化하여 名實相符한 大韓民國의 輸出産業의 先導的 役割을 다 할것입니다.

올해의 輸出은 全國의 7.4%를 차지하는 61億佛을 目標로 7萬餘 産業役軍이 땀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此際에, 中央政府에서 施工中인 中央高速道路 (大邱-泉坪-安東-春川)의 連結 道路 擴張工事は 하루의 物動量이 1萬餘臺나 되는 우리 龜尾工團 入住業體에게는 工産品 輸送의 主要關門으로서 많은 希望과 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當初 漆谷郡 架山面 泉坪里 周邊에 新設되고 있는 架山인터체인지는 大邱 安東間 國道 5號線과 龜尾 泉坪間 國道 25號線등 2個地域에 建立토록 設置할 豫定 이었으나, 지난해 11월께 龜尾 泉坪間 國道上의 進入路는 建設하지 않는 것으로 設計가 變更되었습니다.

따라서 龜尾工團 및 尙州·店村地域에서 進入하는 1일 平均 2萬5千餘臺의 各種 車輛과 特히, 龜尾工團 製造業體등의 原資材 및 製品을 輸送하는 車輛이 中央高速 道를 利用할 境遇 2Km가량을 돌아가야 하는 時間的인 不便은 물론, 輸送費 過多 負擔으로 生産費에도 影響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서 國際 競爭力의 弱화로 輸出 産業에 큰 打撃을 받게 되는 것은 自明한 일일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서 道路 利用度를 살펴보면,

大邱 安東間 國道 5號線은 中央高速道를 利用하는 進入路가 架山,義城等 7個所가 있으나 龜尾,善山,金泉,金陵,尙州等の 物動量을 消化할 수 있는 進入 機能은 架山 인터체인지 단 한곳밖에 없으며, 當初 計劃 進入路 地點에서 變更計劃 設計된 進入路 地點사이 左廻轉 回數가 3회를 하도록 함으로서 그에 따라 惹起될 交通事故 및 滯症問題는 더더욱 深刻히 考慮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道路工事側은 當初 中央 高速道路의 規模가 2次線에서 4次線으로 變更됨에 따라 I·C의 體系도 開放式에서 閉鎖式으로 바뀌어져 設計自體가 變更되었다고는 하나, 當初設計에서 龜尾·尙州 方面의 進入路 位置를 變更하여도 充分하다고 生覺되며 龜尾 泉坪間 國道 25號 2次線이 中央高速道路 進入車輛 過多에 따른 交通滯症의 誘發은 없을 것으로 思料됩니다.

무릇, 國家發展에 原動力은 道路·交通網의 長期的 眼目에서의 構築이 重要な 根幹으로 生覺한다면 우리 龜尾市 議會는 現在 設計變更이 되어 推進되고 있는 工事に 따른 汎市民的 副作用과 國家的 損失을 深히 憂慮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다시 한번 設計變更에 따른 妥當性·經濟性·現實性 등을 再檢討 하시어 우리 龜尾에 入住하여 있는 企業體들에 活力을 불어넣어 微力이나마 國家發展에 希望을 가지고 다함께 寄與할 수 있도록 國家 政策의 地方的 配慮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龜 尾 市 議 會 議 員 一 同

1993. 6. 23.

제 26 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건 명	광역상수도 건설비의 지방비 분담요구에 대한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집 회 기 간	1993. 6. 14 - 6. 23				
의 결 일 시	1993. 6. 23	재 적 의 원	21 명	출 석 의 원	21 명
의 결 사 항 ○ 의결결과 : 원안대로 채택 첨 부 : 광역상수도 건설비의 지방비 분담요구에 대한 반대 결의문 (안) 1부. 끝 1993 년 6 월 24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이 대 일					
의 결 방 법	이상유무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21 명	반 대	명	기 권

決 意 文

龜尾市議會는 지금까지 廣域上水道 建設事業을 全額 國庫負擔으로 施行하여 왔으나 現在 洛東江 廣域 上水道 제2차 擴張 工事を 推進하면서 本 工事に 所要되는 事業費의 30% 該當額을 地方費 負擔으로 마련코자 하는 報道를 接하고 있는 바, 이는 現在 地方 財政의 實情을 度外視한 所致로 認識 이의 卽刻 撤回을 要求하면서 다음과 같이 決意 한다.

1. 地方財政 自立도가 낮고 上水道 公企業 및 特別會計는 負債額이 많으며 上水道 料금이 現實化 되지않아 維持管理에도 어려운 實情에 있어 廣域上水道 建設費 一部 負擔은 不可能하므로 이를 斷乎히 反對한다.
2. 工團造成으로 수돗물 需要를 增加시켜 上水道 施設擴張 要因을 誘發시킨 事業費를 一般 市民이 負擔케 하는 것을 적극 反對한다.
3. 中央政府는 地方自治團體의 健全育성과 自立基盤의 定着을 위해 上水道 公企業의 擴充과 健全財政 運營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洛東江 廣域上水道 제2차 擴張 事業費 全額을 國庫로 施行하여 줄것을 要請한다.

1993 年 6 月 23 日

龜 尾 市 議 會 議 員 一 同